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091
------	------

2025. 9. 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년 8월 11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25년 8월 14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9.4.)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가.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사업은 시민체육 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고 체육발전 및 체육인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사무로, 위탁 기간이 2025.12.31. 만료 예정임에 따라

나. 체육 분야 사업에 대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효율적 운영·관리가 가능한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

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 운영규모 : 24개 종목 26개팀 189명

나. 위탁근거 및 추진현황

- 민간위탁 추진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 서울특별시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9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추진계획('25.6.9.)
- 민간위탁 추진현황
 - 1차 : 2002.1.~2004.12. (3년), 서울시체육회
 - 2차 : 2005.1.~2007.12. (3년, 재계약), 서울시체육회
 - 3차 : 2008.1.~2010.12. (3년, 재계약), 서울시체육회
 - 4차 : 2011.1.~2013.12. (3년, 재계약), 서울시체육회
 - 5차 : 2014.1.~2017. 3. (3년 3개월, 재계약), 서울시체육회
 - 6차 : 2017.4.~2019.12. (2년 9개월, 재위탁), 서울시체육회
 - 7차 : 2020.1.~2022.12. (3년, 재계약), 서울시체육회
 - 8차 : 2023.1.~2025.12. (3년, 재계약), 서울시체육회
- 민간위탁 재위탁 사전절차 이행여부
 - '25. 6. 9. :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추진계획

(행정1부시장 제96호)

- '25. 7. :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80.21점)
 - ※ 전체 배점의 75점 미만 시, 해당 수탁기관과 재계약 배제
- '25. 7. 14.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적정, 조직담당관)

다. 위탁내용

- 위탁기간 : 위탁일로부터 3년('26.1월 ~ '28.12월)
- 위탁유형 : 사무형
- 위탁방법 : 재위탁(공모)
- 위탁목적 :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 및 선수들이 경쟁력을 높여 상위의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직장운동경기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전반적 필요사항을 지원
- 기관선정 : 공개경쟁 모집을 통해 시 체육정책에 부합한 사업계획 및 운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 선정
- 위탁업무
 - 경기력 향상을 위한 선수훈련 및 각종 경기대회 출전
 - 선수의 체력보강을 위한 급식개선 및 효율적인 생활관의 운영
 - 우수선수 확보 및 성과에 따른 성과급 연봉제 운영
 - 운동경기부의 운영과 관련한 시설·장비의 관리
 - 시정홍보 및 기타 운동경기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사항
- 소요예산(안) : 20,547,241천원('25년 기준)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강옥심)

가.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제1항1)에 따라, 위탁기간 만료와 재계약 횟수 제한에 따라 수탁기관을 공개모집으로 다시 선정하기 위하여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음.

나.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현황

-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는 2025년 5월 기준 24종목, 26팀, 189명(지도자: 32명, 선수: 157명)이며, 현재 수탁자인 서울특별시체육회가 2002년 1월부터 현재까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사무를 수행하고 있음.

<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현황 >

연번	종목	합계	지도자	선수	연번	종목	합계	지도자	선수
1	양궁(남)	5	1	4	14	핀수영(남)	7	1	6
2	육상(혼성)	10	2	8	15	사격(남)	4	1	3
3	복싱(남)	8	2	6	16	조정(남)	5	1	4
4	사이클(남)	9	2	7	17	탁구(남)	7	1	6
5	사이클(여)	9	2	7	18	태권도(여)	7	2	5
6	체조(남)	7	1	6	19	당구(혼성)	4	0	4
7	스피드(혼성)	5	1	4	20	컬링(남)	5	1	4
8	펜싱(여)	11	2	9	21	수영(혼성)	4	0	4
9	축구(여)	26	4	22	22	스키(혼성)	4	1	3
10	쇼트트랙(혼성)	8	2	6	23	컬링(여)	5	0	5
11	핸드볼(여)	18	3	15	24	산악(혼성)	4	0	4
12	소프트테니스(남)	7	1	6	25	브레이킹(혼성)	2	0	2
13	철인3종(혼성)	7	1	6	26	피겨(남)	1	0	1

1)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의(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동 민간위탁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하여 시정홍보 및 체육인 발굴·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수탁자는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경기인 관리, ▶선수단 훈련 및 국내·외 대회 출전 지원, ▶경기인 체력보강을 위한 급식개선 및 효율적인 생활관 운영, ▶시정 홍보 및 기타 운동경기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사항 등의 사무를 수행하고 있음.

<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추진현황 >

위탁기간	위탁업체	수탁자 선정방법
3년('02.1.1.~'04.12.31.)	서울특별시체육회	수의계약
3년('05.1.1.~'07.12.31.)	서울특별시체육회	재계약
3년('08.1.1.~'10.12.31.)	서울특별시체육회	재계약
3년('11.1.1.~'13.12.31.)	서울특별시체육회	재계약
3.3년('14.1.1.~'17.03.31.)	서울특별시체육회	재계약
2.9년('17.4.1.~'19.12.31.)	서울특별시체육회	재위탁
3년('20.1.1.~'22.12.31.)	서울특별시체육회	재계약
3년('23.1.1.~'25.12.31.)	서울특별시체육회	재계약

- 현 위탁기간 동안(2023년~2025년)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과 2025년 브레이킹 및 피겨스케이팅 팀을 창단하여 비인기 취약종목 육성을 위한 노력이 있었으며,

2023년 항저우 아시안 게임(11종목 21명 선수 참가, 금2·은5·동2), 2024 파리 올림픽(4종목 9명 선수 참가, 은 1·동 1), 2025년 하얼빈 동계 아시안 게임(3종목 8명 선수 참가, 금 2·은 3) 등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서울 스포츠 위상을 제고하였음.

- 이와 더불어 시민 스포츠 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 재능기부 등을 상시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스포츠 참여가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원포인트 레슨 및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총 1,439명이 수혜받은 바 있음.

< 최근 4년간 직장운동경기부 실적 현황 >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국내대회 메달 획득 개수	목표	220개	246개	315개	375개
	실적	340개	304개	427개	집계 중
재능나눔을 통한 재능기부	목표	-	45회	47회	49회
	실적	42회	45회	52회	집계 중

- 또한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실시한 민간위탁 종합성가평과를 살펴보면, 개별사무 사업성과 부분에서 총점 48점의 87.3%인 41.91점을 받았으며, 이는 지난 위탁 회차의 총점 38점의 84.6%인 32.16점에 비해 2.7%p가 소폭으로 증가한 것을 볼 때, 민간위탁 사업이 지속해서 발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다만 운영 과정에서 ▶수탁기관의 주요 조직과 직장운동경기부와와의 조화성 부재, ▶목표에 근거한 개인별 직무역량강화 필요, ▶연도별 재정 운용계획 부재, ▶사업계획과 사업성과간 연계성 부족, ▶우수성과(언론 보도 등) 확산을 위한 노력 필요 등 주요 문제점과 개선과제가 도출되었음.
- 특히 다년간 위탁사무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약서 위반, ▶급여 관리 부적정, ▶특근매식비 집행기준 위반 ▶예산과목 및 계정과목 정 부적정 등 예산·회계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기에 효율적인 민간위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도 지적된 문제 지속적인 이행점검과 더불어 소관부서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을 2026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3년간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임.

<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개요 >

위탁사무명	(사무형)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위탁유형	사무형	구분	재위탁
위탁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 (기간 : 2026.1.1 ~ 2028.12.31.)		
사업목적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수혜대상	전문체육 선수 및 지도자
사무내용	○ 위탁 사무 :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 경기력 향상을 위한 선수훈련 및 각종 경기대회 출전		
	- 선수의 체력보강을 위한 급식개선 및 효율적인 합숙소의 운영		
	- 우수선수 확보 및 성과에 따른 성과급 연봉제 운영		
	- 운동경기부의 운영과 관련한 시설·장비의 관리		
	- 시정홍보 및 기타 운동경기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		
	▶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현황('25년 기준)		
	종목 / 팀	24개 종목 / 26개팀(하계 20팀, 동계 6팀)	
	인 원	189명(지도자 32, 선수 157)	
	훈 련 장	26개 팀 40개소(무상 15, 임대 25)	
	생 활 관	22개 팀 25개소(전세 3, 월세 22)	
소요예산(안) ※협약시작 당해연도 기준	○ 수탁기관 총세입세출예산 : 민간위탁금 20,547,241천원		
	- 세부내역(민간위탁금)		
	(단위 : 천원)		
	예산과목 및 내역		세입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20,547,241
			세출
			20,547,241
		인건비	15,534,497
		기본경비	2,290,651
		일반운영비	2,269,453
	수탁기관 운영비	452,640	
	○ 이용료 등 수입금액 : 해당 없음		

- 올해 실시된 2025년 제5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에서도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은 ‘적정’ 심의 결과를 받은 바 있음.

다만 조직담당관은 ‘적정’ 결과의 단서로 ▶홍보, 마케팅 업무 경우 직무 재배치 또는 TF 구성, ▶양방향 소통채널 확대 및 서울시직장경기부 인

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방법 개선 등을 권고하였음.

- 이는 현 수탁기관의 위탁사업부에는 담당자 1명만이 선수단 홍보·마케팅·언론대응 업무에 ▶전담 종목 5팀 관리, ▶체육진흥관리위원회 및 스포츠단운영위원회 관련 업무, ▶규정개정 관련 업무, ▶신규 팀 창단 공모 추진 등을 같이 하고 있어 인력 운영에 있어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임.
- 따라서 관광체육국은 소관업무의 민간위탁 성과가 대시민에게 효과적으로 전파 및 도달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 시 수탁자가 홍보 및 마케팅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지 또는 해당 업무에 전문인력이 적절히 배치되어 있는지 점검해야 할 것임.
- 관광체육국이 조직담당관에게 제출한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의 회서를 살펴보면 ▶위탁 근거법령(「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 있으며, ▶체육 생태계 및 종목별 특수성에 대한 높은 이해 필요, ▶민간기관 수탁에 따라 시비 지원 외에 후원 등 외부재원 확보 가능하기에 민간위탁의 필요성 또한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또한 위탁사무가 다른 방식(직영, 용역, 대행 등)으로는 수행하기 적절하지 않다는 검토결과를 참고하였을 때 동 민간위탁의 경우 경기부 운영 경험에 있는 민간기관을 통해 효율적인 사무 수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다만 수탁기관의 위탁사업부 인력구조에 있어 비정규직 비중(78%)이 매우 높으며, 시간외 근무 역시 연 평균 2,000시간 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비정규인원의 근무 연속성 유지와 더불어 신규 인력 증원 등 직무환경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관광체육국은 직장운동경기부가 체육생태계의 선순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사무 전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제거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충실해야 할 것임.

또한 차기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고용안정성 및 노동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위탁사무 고유의 사업 운영 노하우가 단절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할 것임.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토론요지 : 「없음」

Ⅵ.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0명, 참석위원 6명, 참석위원 전원찬성)

Ⅶ.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3091
------------	------

제출년월일 : 2025년 8월 11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사업은 시민체육 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고 체육발전 및 체육인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사무로, 위탁 기간이 2025.12.31. 만료 예정임에 따라
- 나. 체육 분야 사업에 대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효율적 운영·관리가 가능한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 운영규모 : 24개 종목 26개팀 189명

나. 위탁근거 및 추진현황

- 민간위탁 추진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 서울특별시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9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추진계획('25.6.9.)

○ 민간위탁 추진현황

- 1차 : 2002.1.~2004.12. (3년), 서울시체육회
- 2차 : 2005.1.~2007.12. (3년, 재계약), 서울시체육회
- 3차 : 2008.1.~2010.12. (3년, 재계약), 서울시체육회
- 4차 : 2011.1.~2013.12. (3년, 재계약), 서울시체육회
- 5차 : 2014.1.~2017. 3. (3년 3개월, 재계약), 서울시체육회
- 6차 : 2017.4.~2019.12. (2년 9개월, 재위탁), 서울시체육회
- 7차 : 2020.1.~2022.12. (3년, 재계약), 서울시체육회
- 8차 : 2023.1.~2025.12. (3년, 재계약), 서울시체육회

○ 민간위탁 재위탁 사전절차 이행여부

- '25. 6. 9. :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추진계획
(행정1부시장 제96호)
- '25. 7. :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80.21점)
※ 전체 배점의 75점 미만 시, 해당 수탁기관과 재계약 배제
- '25. 7. 14.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적정, 조직담당관)

다. 위탁내용

- 위탁기간 : 위탁일로부터 3년('26.1월 ~ '28.12월)
- 위탁유형 : 사무형
- 위탁방법 : 재위탁(공모)
- 위탁목적
 -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 및 선수들이 경쟁력을 높여 상위의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직장운동경기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전반적 필요사항을 지원

- 기관선정 : 공개경쟁 모집을 통해 시 체육정책에 부합한 사업계획 및 운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 선정
- 위탁업무
 - 경기력 향상을 위한 선수훈련 및 각종 경기대회 출전
 - 선수의 체력보강을 위한 급식개선 및 효율적인 생활관의 운영
 - 우수선수 확보 및 성과에 따른 성과급 연봉제 운영
 - 운동경기부의 운영과 관련한 시설·장비의 관리
 - 시정홍보 및 기타 운동경기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사항
- 소요예산(안) : 20,547,241천원('25년 기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직장 체육의 진흥) ④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에는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고 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한다.

- 서울특별시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경기부 설치 등) ① 시장은 시민체육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고 체육발전 및 체육인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시에 경기부와 서울특별시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둔다.

제9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체육진흥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육전문기관이나 단체에 경기부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26년 예산 편성 중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김동인(☎2133-2687)